##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민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901

발의연월일: 2025. 4. 17.

발 의 자: 강민국·정동만·김태호

이상휘 • 김미애 • 이헌승

김 건 · 김예지 · 박덕흠

강명구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대상 국내 복귀기업을 선정하여 조세감면, 금융지원, 보증·보험지원, 입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·정보통신업·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·면역 관련 사업을 해야 하고,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·증설해야 하며,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·양도 또는 축소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복귀하면 조건 없이 지원하거나 기준 요건을폭넓게 인정하는 일본, 미국에 비해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실제 2022년도에는 22개 기업만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, 지난 5년간 신용보증기금의 국내복귀기업 일반보증 지원 수도 21개 기업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해외사업장을 청산·양도·축소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유사 사업장을 신설·증설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사업장 청산·양도·축소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3호·제4호, 제7조 및 제15조).

#### 법률 제 호

#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"를 "대통령령으로"로 하고,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목의"를 "국내 복귀를 통하여 신설·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"으로 하고, 같은 호 각목을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"해외사업장의청산·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"을 "국내사업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해외사업장의 청산·양도 또는 축소, 국내사업장"을 "국내사업장"으로 한다. 제15조의 제목 중 "해외사업장의 청산 등"을 "국내복귀"로 하고, 같은 조 중 "해외사업장의 청산·양도 또는 축소 등 국내복귀"를 "국내복귀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,
1. •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"국내복귀"란 <u>다음 각 목의</u>	3 <u>대통령령으</u>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	<u>로</u>
<u>서 대통령령으로</u> 정하는 바에	
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	
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	
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	
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	·.
신설ㆍ증설하는 것을 말한다.	
가.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	<u>&lt;삭 제&gt;</u>
<u>장을 청산·양도 또는 축</u>	
소한 경우	
나.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	<u>&lt;삭 제&gt;</u>
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	
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경우	
4. "국내복귀기업"이란 <u>다음 각</u>	4 <u>국내</u>
<u>목의</u> 기업을 말한다.	<u>복귀를 통하여 신설·증설된</u>
	사업장을 보유한
가.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	<u>&lt;삭 제&gt;</u>

· 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

 나.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

 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

 산・양도 또는 축소하는

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

제7조(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저선정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있다.

- 1. (생략)
- 2.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 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 것
- 3. (생략)
-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 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 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
<u><삭 제></u>

에7조(지원대신	상 국	·내복귀〉	기업의
선정) ① -			

1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
3. (	현	행과	같음)
------	---	----	-----

2	 	 	

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.

- 1. (생략)
- 2. 해외사업장의 청산・양도 또 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 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 서
- 3. (생략)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복귀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에는 다음 각 호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 로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 당 기업은 제2항에 따른 국내 복귀계획서에 조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1. (생략)
- 2. 해외사업장의 청산・양도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해외사업장의 청산 •양도를 완료할 것
- 3.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되 <삭 제> 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

1. (현행과 같음)
2. 국내사업장
3. (현행과 같음)
(3)
<b></b>
,,
1. (현행과 같음)
<삭 제>

## 한과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 을 축소할 것

- 4. (생략)
- ④ (생 략)
-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은 <u>해외사업</u> 장의 청산·양도 또는 축소, 국 내사업장의 신설·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이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 경된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5조(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 기를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청산 ·양도 또는 축소 등 국내복 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	4. (현행과 같음)	
	④ (현행과 같음)	
	<b>⑤</b>	
		국내사업
	<u> 장</u>	
제	15조( <u>국내복귀</u> 지원) -	
		<u>국</u>
	내복귀	